

論壇解說

明細書의 補正과 要旨變更



李亮求

〈國際特許研修院 부교수〉

◎ 目 次 ◎

- I. 序論
- II. 現行法下의 補正制度
- III. 明細書의 補正과 要旨變更
- IV. 要旨變更된 補正書의 措置
- V. 要旨變更된 補正書의 不採擇에 따른 不服方法
- VI. 改善方案
- VII. 結論

〈이번 號에 全載〉

I. 序論

特許制度中 先願主義을 採擇하고 있는 경우에는 出願을 서두르는 關係때문에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記載의 表現, 請求範圍의 内容 및 先行技

術의 調査等을 完全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出願當時에는 完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明細書라도 審查 또는 審判過程에 있어서 請求範圍의 減縮等 明細書 또는 圖面을 補正하여야 할 必要가 생기게 된다. 더구나 審查請求制度의 導入으로 特許出願의 경우에 있어서는 5年(優先權 主張을 한 出願은 6年)이 거의 되어 審查請求를 하려고 出願當初의 明細書 및 圖面을 檢討하여 보면 出願後의 技術의 進歩 또는 그 發明에 對한 試驗 研究等을 實施한 경우에 있어서는 出願當初의 明細書의 記載가 만족스럽지 못한 곳이 發見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위와 같은 事情때문에 明細書 또는 圖面을 補正할 경우 出願當初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되지 않았던 事項이 變更 또는 追加되어 要旨變更의 問題가 發生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行法下에서는 要旨變更의 判斷基準이 抽象的이어서 明確치 않을 뿐 아니라 要旨變更을 둘러싸고 그 補正書를 檢討한 審查, 審判官과 出願人 사이에 見解差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이 要旨變更된 補正書를 採擇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不服制度가 合理的이지 못하여 出願人の 救濟가 소홀히 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現行法下의 明細書의 補正과 要旨變更의 判斷 및 그 不服方法을 檢討하고 그 改善方案을 提供하는데 本研究의 目的이 있다.

II. 現行法下의 補正制度

가. 概說

補正이란 出願의 内容을 自進하여 또는 命令에 의하여 訂正・補充하는 것으로 節次에 關한 補正과 明細書 또는 圖面에 關한 補正으로 區分된다(特許法 第10條의2). 위의 補正中 明細書 또는 圖面(以下 明細書라 한다)의 補正是 出願인이 自由로 하도록 하면 여러가지 폐단이 생기므로 特許法은 補正制限主義를 採用하여 内容과 時期에 對하여 制限을 하고 있는 바, 内容을 制限하는 理由는 出願當初의 明細書를 補正하면

그補正效果는 出願日까지 소급되는 것이므로當初 記載되지 않았던 事項이 特許를 받게되는結果가 되어 先願主義에 反하게 되고 또한 出願當初에는 請求範圍을 넓게 記載하였다가 特許後에 請求範圍을 넓게 補正하게 되면 法的安定性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時期를 制限하는 理由는 審查節次等을 지연시키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나. 出願公告決定謄本 送達 前의 補正

補正範圍는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된 事項의 範圍내에서 請求範圍을 增加·減少 또는 變更하는 것은 可能하다. 換言하면 要旨變更이 되지 않는 限自由이다(特許法 第10條의3).

補正時期는 出願日(優先權主張을 認定받은 出願인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日)로 부터 1年 3月內이면 審查請求의 有無에 關係없이 自進補正할 수 있다(特許法 第10條의2 第2項). (審查請求가 되어 있으면 1年 3月內에 審查에着手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審查를 혼란 시킨다는理由로 反對說¹⁾이 있다).

出願日로 부터 1年 3月 經過後일 때에는 ①出願인이 審查請求하는 경우 그 審查請求와 同時に ②出願인이 아닌 者로 부터 審查請求가 있다는 通知를 特許廳長으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3月內에 ③拒絶理由에 對한 意見書를 提出하는 경우 그 意見書 提出期間내에 ④拒絶査定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하는 경우 그 審判請求日로 부터 30일내에 限하여 可能하다(特許法 第10條의2 第3, 4項).

다. 出願公告決定謄本 送達後의 補正

出願公告決定은 審查가 일단락된 狀態이므로 明細書가 補正된다면 審查를 다시 하여야 되고 出願公告에 의하여 發生되는 臨時保護의 權利(特許法 第91條)의 範圍가 變動되므로 法的安定性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出願公告決定 後의 補正是 原則적으로 禁止되고 例外적으로만 認定

註 1. 金源鑑外2 特許法概說 p. 208

된다. 補正이 認定되는例外는 ①異議申請에 對한 答辯書를 提出하는 경우 그 答辯書 提出期間內에 ②出願公告決定後拒絶理由가 있을 때 意見書를 提出하는 경우 그 意見書 提出期間內에 ③拒絶査定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하는 경우 그 審判請求日로 부터 30일내에 限하여 請求範圍의 減縮, 誤記의 訂正, 명료하지 않은 記載의 釋明만을 補正할 수 있다(特許法 第10條의2 第3項).

III. 明細書의 補正과 要旨變更

가. 審查基準

要旨變更이란 明細書의 要旨 即, 請求範圍에 記載한 技術的 事項을 變更시키는 것으로서 明細書를 補正한 結果 明細書의 要旨が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한 事項의 範圍内」가 아닌 것으로 되었을 때 그 補正是 明細書의 要旨를 變更시키는 것으로 取扱토록 하고, 要旨變更을 判断할 때의 注意事項으로서 ①各各의 補正是 항상 出願當初의 明細書만을 比較對象으로 하고 ②當業者가 出願當初의 明細書의 記載로 보아서 自明한 事項은 記載된 事項의 範圍내로 간주하며 ③記載된 事項의 範圍내의 判断은 請求範圍의 變更與否뿐 만 아니라 請求範圍는 變하지 않았더라도 明細書를 補正한 結果 請求範圍에 記載된 技術的 事項이 實質적으로 變更되는 지의 與否에 對하여도 注意하여야 하며 ④發明의 目的 또는 用途를 附加 또는 變更시키는 補正에 對하여도 그 補正에 의하여 請求範圍에 記載된 技術的 事項이 實質적으로 變하는 지의 與否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記載하고 있다. 그리고 이 基準은 出願公告決定謄本의 送達 前後를 불문하고 適用되도록 하고 있다.

나. 外國의 立法例

先進國의 特許法은 모두 要旨變更에 關한 規定을 두고 있는 바 美國은 發明의 開始에는 新로운 事項(New Matter)을 追加하는 補正是 不

認定하고 있으며(法 第132條), 西獨은 出願內容의 擴張補正是 어떠한 權利도 發生하지 않는다고 定하고 있으며(法 第38條), 유럽 特許條約에서는 最初에 出願한 内容을 超過하는 主題事項(Additional Subject Matter)을 包含한 补正是 不認定하고 있으며(法 第123條) 이러한 补正是 法 第123條 違反으로서 拒絕의 對象으로 하고 있다. 日本은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된 事項의 範圍外의 事項은 要旨變更으로 認定하고 있다(法 第41條).

또한 現在와 같은 技術進步時代에 있어서는 發明은 점차 복잡화되고 있으며, 하나의 發明을 完成시킨 후에도 먼저의 發明과 關聯된 改良發明等이 계속 出現되므로 이 改良發明等을 먼저의 發明에 包含시키면 技術開發된 内容의 權利保護가 完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改良發明等을 먼저의 發明에 包含시키게 되면 要旨變更의 問題가 發生되므로 西獨, 英國, 日本等에서는 第1의 國內 特許出願後에 當該 出願에 關한 發明과 關聯된 改良 또는 發展된 새로운 事項(New Matter)을 먼저의 特許出願에 追加할 수 있도록 하는 國內優先權制度를 採用하여 要旨變更 問題와 關聯하여 생기는 權利의 不安定 狀態를 해소하고 있다.

다. 關聯判例

1). 우리나라의 判例

○ 大法院 87. 5. 12宣告, 84후 125判決

(前略) 要旨變更이라 함은 最初 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및 圖面과 그 후에 补正된 明細書 및 圖面을 상호 比較하여 最初에 出願된 特許請求의 範圍에 새로운 要旨가 追加變更되는 等 그 内容에 同一性을 認定할 수 없는 정도의 實質的인 變化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만약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變更이라면 要旨의 變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中略) 原審決理由에 要旨變更의 事由를 具體的으로 논리 정연하게 說示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說示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最初의 出願書 만에 의하여 그 要旨가 不明確하여

(中略) 原審決에는 필경 要旨變更에 關한 法理를 誤解하거나 審理를 다 하지 아니하고 審決에 그 理由를 갖추지 아니한 違法이 있다할 것이다(後略).

※ 同旨의 判例는 大法院 87. 8. 25宣告, 86후 112判決 및 大法院 89. 2. 28宣告, 86후 113判決等에서 볼 수 있다.

2) 日本의 判例

○ 最高裁 昭 47. 12. 14判決, 昭 41(行ツ) 第1號(特許判例百選(第2板 p. 76)

(前略) 實質的으로 特許請求範圍를 擴張 또는 變更하는 訂正是 (中略) 第3者의 利害調整의 見地에서 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解析된다.

上記와 같이 解析되는 이상 特許法 第126條(우리나라 特許法 第63條 第2項과 類似함)에 規定된 實質上 特許請求範圍를 擴張하는 變更을 하는 訂正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된 當該 發明의 構成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事項에 對하여 그 内容의 範圍, 性質等을 擴張 또는 變更한 것 即, 訂正前과 訂正後에 있어서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는 限界가 차이가 생기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解析하는 것이明白하다(以下 構成에 對하여 具體的으로 對比判斷한 것은 省略)

○ 東京高裁 昭 41. 8. 25判決, 昭 35(行ナ) 第4號(特許判例百選(第2板) P. 78)

(前略) 出願當初의 圖面 및 說明書의 一部를 訂正하는 것이(中略) 當該 出願의 要旨를 變更하는 지의 與否는 出願當初의 圖面 및 說明書와 訂正된 圖面 및 說明書의 各 記載를 形式的으로 比較하여야 할 뿐아니라 나아가서 實質的으로 當該 出願 考案의 本質乃至 實體에 變動이 있는지의 與否를 決定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中略).

訂正이 許容되는 範圍를 너무 좁게 할 때에는 出願人の 利益保護에 缺點이 있고 (中略) 訂正이 訸容되는 範圍를 너무 擴大할 때에는 當該 出願 考案과 先, 後願의 關係에 있는 第3者等의 利益을 해치고 소위 先願主義를 採用한 法의 趣旨에

反하는結果를招來하는 것이明白하기 때문에 서로對立하는利害의調和點을發見하여 위의訂正이許容되어야 할範圍를定하는基準으로 하는것이상당하고, 위와같은觀點에서實質적으로考察하여서訂正의許否를判決하는것은앞의利害調和의要請에부응할수있는것으로생각되기때문이다(以下構成에對하여具體적으로對比判斷한것은省略).

3) 美國의判例

○ In re Oda CCPA事件

(前略)制定法自體에는무엇이New Matter인지에대하여도움이되지않고어떠한變更이New Matter로서禁止되어있는지는CasebyCase에의하여定하여질수밖에없다.또한여러가지解說에는New Matter란「出願當初의明細書 또는圖面에記載되어있지않고처음의發明과먼것이包含되어있는것을말한다」「전혀別個의發明 또는記載된發明의構成을變更하는것等을가르킨다」고解說하거나「그發明의實施 또는記載의完全性에필수적인誤記의訂正 또는特徵의脫落의補充을目的으로하는訂正是當일誤記가明白하고明細書作成者의事務上의오류이거나發明者가出願의方식에익숙하지못했기때문에생긴것이고이러한訂正이發明의要旨를變更하는것이아니라면許容된다」는것이라고말하므로共通된基本原則은出願當初의明細書에記載한發明을變更하여서는안되는것이라고結論한다(以下具體的對比判斷은省略).

IV. 要旨變更된補正書의措置

審查官또는審判官은出願人이提出한補正書가要旨變更된것이라고認定된때에는그補正書를採擇할수없는理由를特許廳長또는審判長명의로出願人또는異議申請人에게文書로서通知하고意見을들을수있도록되어있으며(特許法施行規則第16條),審查關係事務取扱規程第31條에는提出된補正書가要旨變更된것이라고認定된때에는그理由를特許廳長

명의로出願人에게通知하고意見書提出의機會를주어야하며,提出된意見書에의하여서도採擇될수없는경우에는그補正書는要旨變更되었으므로採擇하지않는다는趣旨를通知하도록하여審查官의裁量을억제하는수단만을가지고있다.

V. 要旨變更된補正書의

不採擇에따른不服方法

要旨變更된補正書를採擇하지않았을경우現行法下에서는出願인이不服할수있는制度가전혀마련되어있지않다.

다면要旨變更된補正書와關聯된當該出願이拒絶査定되었을경우에만拒絶査定不服抗告審判을請求할경우에限하여그抗告審判의請求理由에拒絶査定不服理由와要旨變更된補正書의不採擇에따른不服理由를함께主張하여간접不服할수는있다.

그러나要旨變更된補正書의不採擇에따라權利의侵害가있다고認定될때에는行政審判法에서定하는行政審判의對象²⁾이되므로行政審判은請求할수있다.

VI. 改善方案

가. 補正書不採擇時의不服方案講究

出願人이提出한補正書를審查·審判官이要旨變更이라고判斷그趣旨를通知한後에는現行特許法下에서는不服制度는없고(當該出願이拒絶査定되었을경우拒絶査定不服抗告審判에의하여明細書의要旨變更에대하여間接으로不服할수는있음),行政審判法에의한行政審判의請求만이可能한바行政審判은特許分野를잘알지못하는特許廳의上級行政機關인商工部가裁決廳이되므로(行政審判法第5條)特

註 2) 行政審判法 第3條(行政審判의對象)行政廳의處分또는그不作為에對하여다른法律에特別한規定이있는경우를除外하고는이法에의하여行政審判을제기할수있다.

特許事件은 專門의 技術이 없이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法律專門知識만을 가진法官으로構成되는法院의 管轄로 하는 것보다 特別行政官廳인 特許廳에 擔當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趣旨³⁾로 볼 때 出願人の 利益保護가 소홀히 될 경향이 높을 것이다.

日本의 경우에는 出願人の 利益保護를 위하여 補正却下制度와 補正却下決定에 對한 審判制度⁴⁾(日本特許法 第53條 및 第122條 參照)를 두고 있으나 이制度는 特許無效審判等과 같이 節次가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여 處理期間, 費用面等에서 經濟的이지 못하다. 上記한 點을 감안하여 出願이 審查에 係屬中인 때에 要旨變更에 의하여 補正書를 不採擇할 때에는 現行 異議決定과 같이 審查官 合同으로 이를 決定하고 不採擇의趣旨를 通知한 후에 出願人에게 補正書 提出機會를 부여하여⁵⁾ 出願人の 要旨變更에 關한 실수를 補完하여 주고, 위의 不採擇 通知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경우에는 特許廳 抗告審判所에當該 補正書의 不採擇에 따른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制度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시된다.

위와 같이 要旨變更의 判斷에 신중을 기하므로서 審查官 또는 審判官과 出願人の 見解差에 따른 마찰을極少화할 수 있고, 出願人에게 再補正의 機會를 주므로서 복잡한 審判制度에 이르지 않고 要旨變更問題를 거의 解決할 수 있고不服審判制度를 마련하므로서 그 救濟에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展望된다.

나. 要旨變更을 看過 또는 誤認하여 補正書가 採擇된 경우의 第3者의 救濟措置 講究

出願公告決定臘本의 送達前 또는 後에 한 補正이 要旨變更이 된 것임에도 不拘하고 審查官 또는 審判官이 看過 또는 誤認하여 그 補正書가 採擇되므로서 出願日이 不當하게 소급되어 第3者의 利益을 害치는 경우가 特許權設定登録後에 發見되는 바 現行法에는 第3者의 不利益을 救濟하는制度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日本의 경우에는 第3者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出願公告決定臘本의 送達前에 한 補正이 特許權設定登録後에 要旨變更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그 補正是 有效하나 當該 出願은 補正書 提出日에 出願한 것으로 간주하며(日本特許法 第40條 參照), 出願公告決定臘本의 送達後에 한 補正이 特許權設定登録後에 要旨變更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그 補正是 無效이고 그 補正前의 特許出願에 對하여 特許가 될 것으로 認定(日本特許法 第42條 參照)하여 第3者에게 不當한 不利益을 주지 않도록 措置하고 있다.

上記한 出願日을 補正書 提出日로 하는 것(出願日의 늦춤)과 補正無效를 認定하는 것은 審判官等이 하며, 第3者는 늦추어진 出願日을 基準으로 하거나 補正이 無效인 것을 主張하여 特許無效審判 또는 先使用權等을 主張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上記한 日本의 경우처럼 出願日의 늦춤과 補正無效制度를導入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認定되나 補正의一部에만 要旨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出願日의 部分 늦춤⁶⁾과 補正의 部分無效도 신중히 檢討하여 하자가 없는 部分을 救濟하므로서 特許權者가 不利益을 받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⁷⁾.

다. 國內優先權制度의 導入

國內優先權制度는 技術開發內容의 權利保護에完全을 이룰 수 있고 第1의 國內特許出願後 1年以内에 새로운 事項을 追加하는 것을 可能토록 하므로서 要旨變更問題가 部分的(出願日로부터 1년以内에 補正하는 경우)으로는 解決할 수 있어 特許廳의 事務를 경감하고 出願人は 繼續적으로 發生되는 研究結果의 權利化에 有用한點等이 없으므로 이의 導入을 적극적으로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註 3) 李秀雄, 工業所有權法, P.275

4) 이制度는 現在 日本만의 特有의制度이다(日本特許管理 Vol. 21 No. 12, P. 1159)

5) 現行 特許法下에서도 要旨變更된 補正書와 關聯된 當該出願이 拒絕查定되었을 경우 이에不服하여 拒絕查定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할 경우에는 請求日로부터 30日以内에 要旨變更되지 않은 補正書가 提出되면 이 補正書가 採擇된다.

6) 파리조약 4조 F의 部分優先權主張의 趣旨와 같음

7) 日本特許管理 Vol. 28 No. 9 p. 1025

라. 要旨變更 判斷基準適用의 統一

現行 特許法 및 明細書의 要旨變更에 關한 審查基準에는 補正이 許容될 수 있는 限界가 抽象的이므로 Case by Case에 의하여 補正의 許容範圍를 定할 수 밖에 다른 方法이 없다 하더라도 既存의 審查基準 또는 判例等을 無視한채 審查官 또는 審判官의 裁量에 따라 그 判斷이 行하여 지는 경우가 있어서 審查基準 및 判例等의 適用에 統一化가 이루어 져야할 必要性이 절실히 要請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審查官 合同判例研究 및 發表會와 教育等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마. 要旨變更判斷時의 審查 및 審理의 徹底

上記한 우리나라와 外國의 立法例 審查基準 및 判例를 綜合하면 明細書補正의 許容界限는 거의 共通的이며, 우리나라와 類似한 法制 및 審查基準으로 運用되고 있는 日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審查基準 및 判例와 同一하게 判斷하고 있으며, 또한 日本은 判例와 學說도 一致하고 있다⁸⁾.

그러나 上記 日本의 判決(昭 57. 5. 25判決, 昭 56(行ヶ) 第21號)을 보면 要旨變更에 對한 理論說示와 出願當初의 明細書와 補正된 明細書를 具體的으로 對比 判斷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上記한 우리나라의 判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要旨變更에 對한 理論說示나 그 事由를 具體的으로 論理整然하게 說示하지 않으므로서 심리미진의 違法이 되는 경우가 많은바 審查 및 審判時에 있어서 理論說示와 그 事由를 具體的으로 對比判斷하므로서 出願人の 理解를 도모하여 마찰도 極少化하고 出願人과 特許廳의 經濟的 負擔等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VII. 結 論

要旨變更의 判斷은 出願當初의 明細書와 補正

된 明細書의 本質 乃至 實體에 實質的인 變動이 있는지의 與否를 具體的으로 對比하여 出願人과 第3者에게 不當한 不利益을 주지 않도록 그 調和點을 發見하여 決定하고, 補正書의 不採擇에 있어서는 出願人の 不利益이 招來되지 않도록 特許行政의 生命인 신속, 公正, 정확, 經濟성을 감안하여 不服制度를 補完하며, 要旨變更를 看過 또는 誤認하여 特許權이 設定되었을 경우에 도 第3者的 利益을 害치지 않도록 함과 同時に 特許權者の 不利益도 防止하기 위하여 出願日의 部分 託付制度도 導入이 檢討되어야 하고, 出願後 1年 以内에 完成되는 改良發明과 關聯하여 國內優先權制度의 導入도 바람직한 것이므로 이의 導入으로 要旨變更의 判斷時의 審查, 審判官과 出願人の 마찰을 감소시키고 技術開發된 内容의 實質的인 權利保護가 되도록 하므로서 特許制度의 國際化추세에 부응하고 出願人과 第3者의 利益과 期待를 充足하여 民本行政을 實現特許行政의 細心성을 확보하고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南啓榮外3, 新特許法, 서울, 考試界, 1987
2. 李秀雄, 工業所有權法, 서울, 瑞興出版社, 1983
3. 金源鎬外2, 特許法概說, 서울, 大光書林, 1985
4. 李尚圭, 新行政法論(上), 서울, 法文社, 1988
5. 滝野文三, 工業所有權法(上), 日本, 中央出版部, 昭 54
6. 日本特許廳, 工業所有權法逐條解說, 日本, 發明協會, 昭 58
7. 日本發明協會, 判例特許訴訟法, 昭 61
8. 特許廳, 審查一般基準
9. 日本特許協會, 特許管理 Vol. 21, 28, 32.
10. 特許判例百選(第2板), 日本, 有斐閣, 1985

8) 東京高裁 昭 57. 5. 25判決, 昭 56(行ヶ) 第21號
(日本 發明協會, 判例特許訴訟法, p. 146)